

기안용지

문류기호 문서번호	주택 30321-	전화 : 926-4825	상 하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	구 청 장	서울특별시장
수신처 보존기간		전체	
시행일자	'89.11.29		
보조 기관	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	협 조 기 관	문서통계 검열 1989.11.29 결재 1989.11.29 발송 1989.11.29
기안책임자	박영규	(운상근	발 송
경유 수신 창조	각안참조	발 신 명 의	1989.11.29 발송 1989.11.29
계 목	분양처분 정정시행 및 공람공고		검조통제 총점 1989.11.29 1989.11.30 제973호

(제 1 안) 내 부 결 재

1. 서고시 제342호 (81.9.2)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전농구역 분양처분지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대상토지로 처분되었는바,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환지부지정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,

2. 동 사업 구역내 전농동 493-75 토지가 동사업법 제53조 대상토지로 분양처분이 되므로 인한 토지소유자로 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재검토하였던바, 개인사유토지가 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토지로 처분이 되었을 경우 동사업법 제52조(청산금)대상토지로 분양처분 일부 정정하여 청산금을 지급할수 있으며,

1505-25(2-1) 일(1)갑
85. 9. 9승인

190% × 268% 인세용지 2급709㎡

본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주택정책과에서 발행한 것으로
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주택정책과에서 발행한 것으로
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주택정책과에서 발행한 것으로

3. 상기 사유로 동토지에 대하여, 별첨 분양확정조서와 같이 정정시행코저 하오나

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분양확정 정정조서 1 부. 끝.

(제 2 안)

수 신: 동대문구 전농동 493-75 전농상사 주식회사

계 목: 분양확정 정정 통보

1. 귀하께서 제출하신 전농동 493-75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

음과 같이 분양확정 정정하였기 알려드리며, 청산금 지급은 행정절차상 다소 기간이 소요되오

니,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. 분양 확정 정정 내역

(단위: m²)

증 전 의 토 지				관 리	청 산 내 역					비 고
동 명	지 번	지 목	면 적	면적	과도평	감도평	교부	징수	불환지교부금	소유자
전농동	493-75	대	257	224.9	"사업법 제52조 해당토지"					전농상사(주)
					잔납금 1,145,533 원					

(제 3 안)

12.5 원

수 신: 서울특별시장

참 조: 주택거래과장

98

계 목: 분양확정 정정 시행 보고



1. 서고시 제347 (81.9.2)에 의한 주택개량제(전농1구역) 분양처분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대상토지로 처분된 사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처분정정 시행하고 결과 보고합니다.

2. 분양 처분 정정 내역

" 제 2 안 2항 이기시행 "

(제 4 안) 내부결재

제 목: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일부 변경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50호 (79.8.3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전농1구역내 일부 사유토지 (전농동 493-75)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3조 대상토지(불환지 대상 토지)로 처분되었기 동사업법 제52조 대상토지(청산 대상 토지)로 관리처분일부 변경을 위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41조 (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)와 제31조(공람), 제16조(인가 등의 고시)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(권한의 위임) 등 관계규정에 의거 30일간 별안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.

첨부: 관계서류 1 부.

(제 5 안) 공 고 안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50호 (79.8.3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택개량재개발

1505-25(2-2) 일(1)을
85. 9. 9. 승인

190mm×268mm 인쇄용지 2급 60
가 40-41 1988. 9. 23

6-3
"내가아닌 중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"

99



사업 전농1구역내 불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, 일부변경을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41조, 제31조

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.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하며, 토지동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

미수령자에게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.

1989. 11,

서울특별시

가. 명칭;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

나. 위치; 동대문구 전농동 493-75

다. 면적; 26506 m²

라. 시행자; 서울특별시

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 내용

구 분	총 전 의 토 지				처 분 내 용	비 고
	동 명	지 목	지 목	면적		
변경전	전농동	493-75	대	257 M2	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해당지(불환지 대상 토지)	
변경후	전농동	493-75	대	224.7M2	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해당지(청산대상 토지)	

(제 6 안)

수 신; 동대문구 전농동 493-75 최용수 귀하

제 목; 같 은 건 (통보)

100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50호 (79.8.3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택개량 재개발

사업 전농1구역내 불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일부변경을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31조 규정에 의거

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공람공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첨부: 공고안 사본 1 부.

(제 7 안)

수 신: 총무처 장관

참 조: 법무 담당관

제 목: 관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50호 (79.8.3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택개량재개발

사업 전농 1구역내 불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일부변경을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31조 규정에

의거 공람공고하고자 별첨 공고안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
첨부: 공고안 사본 2 부.

(제 8 안)

수 신: 서울특별시장

참 조: 주택개량과장

제 목: 같 은 건 (보고)

1. 주택개량 재개발 전농1구역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별첨 공고안과

이 관보에 공고하고 보고합니다.

첨부: 공고안 사본 1 부.

1505-25(2-2)안(11:00)
85. 9. 9. 승인

190mm×268mm 인쇄용지 2급 60
가 40-41 1988. 9. 23

6-5
"내가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"



(제 9 안)

수 신: 서울특별시

참 조: 시민과장

제 목: 시장 관인 날인 의뢰

1. 우리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전농1구역 관리처분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공람

공고를 하고자 관보게재 의뢰문에 관인날인 의뢰하오니,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총무처 관보게재 의뢰문 사본 1 부. 끝.